

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(김용태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0738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8. 24.

발 의 자 : 김용태 · 이성권 · 고동진
조은희 · 김대식 · 조정훈
김성원 · 임종득 · 서천호
박충권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화재 위험이 높은 건축물 및 시설물 등을 특정소방대상물로 지정하여 소방시설의 설치·점검·관리 의무를 부과하고, 피난시설·방화구획·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차단하며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에 대해서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건축물의 불법 증축이나 내부 구조 변경 등으로 소방시설이 훼손되어 화재 대응에 지장이 초래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, 소방시설의 적정 관리 여부를 점검하는 등 안전관리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건축물의 피난구조설비·소화용수설비 등과 같은 소방시설을 폐쇄하거나 차단한 것뿐 아니라, 훼손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도 소방서장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실효적인 통제 및 종합적 위험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(안 제12조 등).

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,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⑤ 누구든지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을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55조제1항제2호 중 “제12조제3항”을 “제12조제3항·5항”으로, “차단”을 “차단·훼손”으로 한다.

제56조제1항 중 “본문”을 “본문, 제12조제5항”으로, “차단”을 “차단·훼손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2조(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관리 등) ① ~ ④ (생략) <u><신설></u> ⑤ ~ ⑦ (생략)	제12조(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관리 등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 ⑤ <u>누구든지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을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.</u> ⑥ ~ ⑧ (현행 제5항부터 제7항까지와 같음)
제55조(위반행위의 신고 및 신고포상금의 지급) ① 누구든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를 신고할 수 있다. 1. (생략) 2. <u>제12조제3항</u> 을 위반하여 폐쇄· <u>차단</u> 등의 행위를 한 자 3. (생략) ② ~ ④ (생략)	제55조(위반행위의 신고 및 신고포상금의 지급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1. (현행과 같음) 2. <u>제12조제3항·5항</u> ----- ----- <u>차단·훼손</u> ----- ----- 3. (현행과 같음) ② ~ ④ (현행과 같음)
제56조(벌칙) ① 제12조제3항 본문을 위반하여 소방시설에 폐쇄· <u>차단</u> 등의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	제56조(벌칙) ① -----본문, <u>제12조제5항</u> ----- ----- <u>차단·훼손</u> ----- -----

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② (생략)	----- -----. ② (현행과 같음)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